조선충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이현일 / 이명희

- I. 머리말
- Ⅱ.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문화재 등록
 - 1.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의 제정과 특징
 - 2. 고적 및 유물의 등록과정
 - 3. 북한 소재 등록유물의 이전
- Ⅲ.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과 문화재 지정
 -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의 시행과 특징
 - 2. 보물고적의 지정방식과 대상
 - 3. 북한 소재 고적의 지정해제

Ⅳ. 맺음말

이현일,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주요 논저:

「京城帝國大學醫學部の研究活動」(2009)、「植民地朝鮮における醫學研究の軌跡」(2010)、「일제하公立醫學專門學校의 설립과 운영」(2012) 등.

이명희

주요 논저:

「平安監司到任行事圖研究」(200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본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과 지정

이현일 / 이명희

I 머리말

일제는 강제병합 이후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始政 5년' 을 기념하는 朝鮮物産共准會 를 景福宮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그 미술관 건물을 활용해서 충독부고시 제296호에 의거. 總督官房 총무국 총무과 소속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치되었다.1

일제가 한반도의 고건축과 사적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부터의 일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통제하고 고적조사를 통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1921년 10월, 학무국에 고적조사과를 신설하여 고적・古社寺・명승・천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 관련 업무를 박물관 사무와 통합하였다. 1945년 8월 패망할 때까지 재정기축 등으로 주관 부서의 변동 은 있었지만 문화재의 발굴조사, 보존수리, 등록지정, 매장물 처리, 보고서 발간 등의 실무는 조선충독 부박물관의 소관이었다.

광복 직후 12월 3일 박물관에 대한 독립된 직제는 마련되지 않은 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國立博物館이 개관하였다. 박물관 이전 뒤에도 본관 건물은 전통공예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경복궁 복 원사업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철거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생산·보관된 公文書와 유리건판은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도 소장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는 총 8개 분야의 문서철로 나뉜다.2 그 가운데 [고적조사] 문서철은 일제 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계획, 실행,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지정] 문서철에

¹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9), pp. 88-95.

² 국립중앙박물관은 2013년까지 [기부] 6권, [진열] 25권, [구입] 20권, [발견] 21권, [지정] 47권 등 5개 분야 119권 및 [고 적조사] 문서철 57권(「고적조사위원회」, 「복명서」, 「조사보고서」, 「고적유물대장」, 「사진·도면」) 등 총 176권의 자료를 정리하였고, 2017년까지 [국유림], [보존] 등 600여권의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를 누리집에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분야별로 문서철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이를 '관리번호' 로 표기하였다.

는 1933년 말부터 시행된 문화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본고에서는 [고적조사]와 [지정] 문서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고적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 법규가 제정된 배경과 특징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추진된 문화재의 등록과 지정 과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공문서의 내용을 통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하에서의 북한 소재 문화재관리 실태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화재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 유형문화재(國寶·寶物) 및 기념물(史蹟)에 한정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Ⅱ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문화재 등록

1.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의 제정과 특징

일제 초기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법규는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4월에 공포된 대한제국 學部令 제2호「鄉校財産管理規程」, 1911년 조선 불교계를 탄압하고, 사찰 재산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하기 위해 만든 制令 제7호「寺刹令」, 1915년에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82호「神社寺院規則」 등이 있었다. 그러나이들 규정만으로는 문화재의 도굴과 반출, 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일제는 1916년 7월 4일 府令 제52호「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하「보존규칙」)을 공포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3

「보존규칙」은 총 8조로 간소하지만 고적유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고적 및 유물 대장(古蹟及遺物臺帳)」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등록된 고적유물의 변경에 관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재 보존 체계를 강화한 것이었다.

「보존규칙」은 일본에서 1897년부터 시행하던 「古社寺保存法」4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진 규정이었다. 또한 1919년에 반포된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이나 1929년의 「國寶保存法」5에 앞선 것이었다. 한 편 일제는 러일전쟁 직후 조차지가 된 關東州에서도 조선의 「보존규칙」에 뒤이어 1916년 12월 2일 관 동도독부령 제34호로 「古蹟保存規則」6을 공포하였다.

³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9), pp. 71-72.

⁴ 오래된 신사와 사원의 건조물 및 實物類를 보존하기 위한 법률로 「국보보존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⁵ 소유에 관계없이 국가가 국보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지정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호류지(法隆寺) 금당 벽화 소실을 계기로 1950년에 「文化財保護法」이 제정되며 함께 폐지되었다.

⁶ 조선의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보다 짧은 전문 4조로 貝殼, 석기, 토기 및 骨器類를 포유하는 선사유적, 고분, 성채 및 봉수 등의 遺趾를 고적으로 지정하였으나 대장의 작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식민지에서 본격적인 문화재 보존 관련 법규가 앞서 만들어진 것은 본국에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식민지에서 먼저 운용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였다. 사적 보존운동을 전개하던 東京帝國大學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등은 국회의 법안 통과나 천황의 재가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한 채 총독 직권으로 부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3년 뒤 일본에서 법제화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보존규칙」은 총독부령으로 사유권을 제한하고, 고적유물의 신고와 단속 등 제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일임하였으며, 사찰 유물에 관해서는 「사찰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미비한 점들이 있었기에 규칙 제정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7 또한 石窟庵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1920년대 민권 고양과 교통 발달로 관람자가 격증하면서 고적 훼손의 우려가 속출하는 등 「보존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2. 고적 및 유물의 등록과정

「보존규칙」에서 주목할 점은 「고적 및 유물 대장」의 작성이다. '臺帳法' 은 고적조사위원이던 구로이 타 가쓰미가 기존의 '등급분류'를 비판하며, 現狀 보존에 중점을 둔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일의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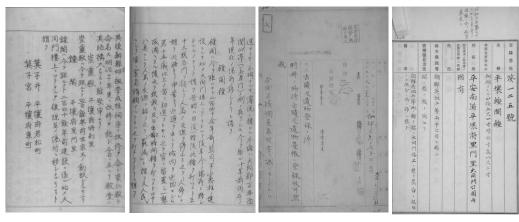
[고적조사] 문서철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총무국에서는 「보존규칙」 제정 전인 1916년 2월부터 이미 조선 13개도의 고분, 城址 및 고대유적을 대상으로 명칭과 소재, 현상, 관련 전설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및 년간의 고적조사를 통해 다소 밝혀졌지만 차후 조선 전역에 걸쳐 사적을 파악하고, 참고품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 중에서도 고적유물로 등록할 물건에 대해서는 소재지, 형상 · 寸尺, 현황, 유래 · 전설 등의 상세 내용을 이듬해 각 도에서 추가로 보고받았다. 도2.

총무국의 박물관계 주임이 고적조사위원회 간사를 겸임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대상 304건의 登錄要項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한 뒤 결의를 거쳐 조선총독에게 신청하였다도3. 총독이 결재한 후 최종 교정된 원고를 바탕으로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기입하고도4. 그 謄本을 해당지역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였음이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문서철에 의하면, 1917년 3월 15일에 136건을 등록하였고 이후 7월 7일에 31건, 8월 20일에 26건이 추가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출간한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의 초고가 문서철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京城의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7개 유물의 소재지가 초고에

⁷ 조선총독부박물관,「朝鮮二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박물관 100년사』 자료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9), p. 57.

⁸ 李成市 著, 박경희 譯, 「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 기』(서울: 삼인, 2001), p. 218.



도 1. 총무국 조사

도 2. 추가 보고

도 3. 위원회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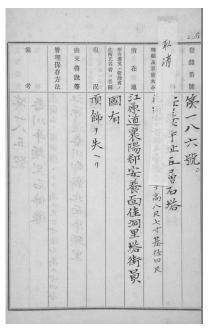
도 4. 대장 등록

는 지방으로 기재되어 있다.⁹ 이들 오류는 초고 작성 이후 편집과정에서 바로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917년에 193건을 등록한 다음 한동안 신규 등록은 없었으며, 移轉이나 취소의 경우에만 변 경사항을 정정하였다. 그러다가 표 1에서 보듯 1926년부터 고적유물의 등록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1931

표 1, 1917년도 이후 등록된 고적 및 유물

번호	명 칭	등록일	번호	명칭	등록일
194	釜山鎭子城臺	1926.3.19	210	慶州九黃里三層石塔	
195	樂浪土城址	1927.5.10	211	黃州邑遺物包含層	
196	公州邑内石槽		212	鳳山鵂鶹山城	
197	公州邑内石槽	1929.4.19	213	江西三墓里古墳	
198	公州邑内幢竿支柱		214	龍岡安性里雙楹塚	
199	中興山城三層石塔	1931,4,11	215	龍岡安性里大塚	
200	中興山城雙獅石燈	1931.4.11	216	江西肝城里蓮華塚	
201	慶州新羅孝子	1932,2.29	217	龍岡梅山里狩獵塚	
201	孫時揚旌閭碑		218	龍岡新德里星塚	1932.2.29
202	慶州西岳里龜趺		219	龍岡新德里龕神塚	
203	慶州三郎寺幢竿支柱		220	順天北倉里八角天井塚	
204	慶州孝峴里三層石塔		221	金海會峴里貝塚	
205	慶州鮑石		222	利原新羅眞興王巡狩碑	
206	慶州拝里三軆石佛像		223	靈光新川里三層石塔	
207	慶州斗垈里磨崖三尊佛		224	靈光新川里石燈	
208	慶州普門里石槽		225	靈岩塔洞五層石塔	
209	慶州普門里幢竿支柱		226	扶餘細塔里五層塔	

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열람 서비스(http://modern-history.museum.go.kr/documents/) [고적조사] 24,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지방별)」 참조.



도 5. 안양사지오층석탑 등록대장

년 8월 28일의 제35회 고적조사위원회(간사 종교과장)에서 26건을 결의한 뒤 이를 이듬해 2월 29일에 등록하고, 4월 21일에 관할 도지사 및 경찰서장에게 대장의 등본을 송부한 것이 공문서에 보이는 마지막 고적유물 등록이다.

지금까지는 1926년에 재개된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일제하에 등록된 고적과 유물의수량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1924년 간행)을 통해 1924년 4월까지 등록된 193건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에 198호까지 등록되어 있고, 199호부터의 등록 내용이 [고적조사] 및 [지정] 문서철에 산재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간행본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186호 安養 寺址五層石塔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착오로 등 록되었으며, 그 내용이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 소재 191호 安 豊寺址五層石塔과 중복되므로 취소 · 삭제하였다 도5.10 즉.

「보존규칙」이 시행된 1933년까지의 17년 동안 등록이 취소된 예는 104호 榮州四賢井里幢竿支柱¹¹와 더불어 2건이었다는 것이 [고적조사] 문서철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3. 북한 소재 등록유물의 이전

조선충독부는 인프라 확충이나 박람회 선전 등 통치의 편의를 위해 근대적 보존을 명목으로 한반도의 문화재를 무분별하게 이전하였다. 또한 보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고적유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가 일본과 해외로 유출되었다.

공문서에 의하면, 한반도 북부 소재 등록유물이 원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경우는 124호 平壤 七層石塔, 125호 平壤鐘閣鐘, 136호 慶源女眞字碑 등 3건이다.

우선 124호 평양칠층석탑은 경복궁 資善堂 등 수많은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한 오쿠라 기하치로 (大倉喜八郎)가 탐내던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¹² 원래는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閑似亭(일명 車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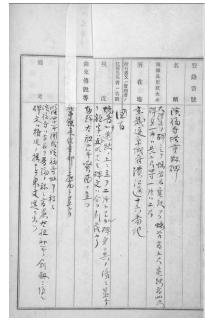
^{10 [}고적조사] 21,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 참조.

^{11 「}대학의 연구자료라도 낙랑고분 발굴은 不許」, 『매일신보』, 1926년 8월 4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근 인민의 묘석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결의하였다. 등록유물이 유실되는 등 일제가 자랑하던 문화재 보존 행정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드러나며, 당시 조선 민중의 문화재 인식 수준 또한 가늠할 수 있다.

¹² 고적조사위원회는 이 탑 대신 1915년 공진회장을 장식하기 위해 총독부박물관 앞뜰로 옮겨 왔을 뿐 진열 가치는 떨어 진다며 利川鄉校傍五層石塔을 1918년 제11회 위원회의 결의로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에 넘겨준다. [고적조사] 58,

옆에 있었다. 1906년 평양역 확장을 위해 평양부 紅梅町의 정거장 앞으로 옮겨졌다가 재차 역이 확장되면서 철도국이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여 1925년 제21회 위원회의 결의로 大同門公園 내로 이건하게 되었으며, 平壤停車場前七層石塔이라는 명칭도 바뀌었다. 1933년 대동강 제방을 쌓으면서 토목출장소가 대동문 北隣에 초목을 심은 뜰로 옮겼다. 13 이 탑이 현재 龍華寺 앞뜰에 있는 북한 국보 제24호 弘福寺六角七層塔이다.

이문리에 있던 125호 평양종각종은 목재가 腐朽하는 등수리가 필요하지만 經費 문제로 공사를 미루다가 마침 평양부에서 '市街整理'를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1927년 제26회 고적조사위원회 결의에 의해 대동문공원 안으로 이전 · 보존하였다. 14 현재 북한 국보문화유물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도 6. 연복사탑중창비 등록원고

136호 경원여진자비는 1916년 제3회 위원회에서 조선총

독부박물관에 옮기기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는 1918년에 이건하였다. 15 1924년 간행된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에는 소재지가 정정되었지만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에는 '變更' 이라는 메모만 있을 뿐원소재지인 합경북도 경원군 그대로이다.

한편 등록되지 않았지만 공문서에 의해 이전 내역이 확인된 유물도 있다. 2012년에 소재가 확인되어 이듬해 5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48호로 지정된 演福寺塔重期碑는 1916년 6월 총무국에서 조사한 '고적 및 유물 등록안' 중 4호로 회부되어 8월 12일 제2회 위원회를 거쳐 9월 5일에 결재되었으나 경성 龍山鐵道俱樂部 소유였던 관계로 등록되지 않았다. 비는 「보존규칙」 공포 전인 1908년 개성 연복사지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리석 碑身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당시 공문서에는 두 조각(길이 각 2척 4촌, 2척)으로 折損되어 螭首(높이 5척) 및 龜趺(높이 4척) 옆에 두었고, 額字는 분명하나 비문은 완전히 剝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도6.16 [고적조사] 문서철을 통해 현재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의 원형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적조사위원회 제1회~제12회」 참조.

^{13 [}지정] 24. 「조선총독부 보물 지정 대장-사지(寺址)별」 참조.

^{14 [}고적조사] 22, 「고적 및 유물 대장 등본(제1호~제136호)」 참조.

¹⁵ 국립중앙박물관 본관5191-2.

^{16 [}고적조사] 18. 「등록원고」 참조.

Ⅲ.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과 문화재 지정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의 시행과 특징

1933년 8월 제정된「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하「보존령」)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1916년에 공포된「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고적조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발족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17 앞서 밝힌 대로 府令인「보존규칙」으로는「遺失物法」과「사찰령」 등의 상위 법령을 형식적으로 아우를 수 없었다. 또한 명승ㆍ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보존령」을 공포하여 보물ㆍ고적 등을 선별해서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정'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고적조사를 위한 법규였던 「보존규칙」은 총 8조로 구성되어 고적유물의 정의, 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었다. 이에 비해 「보존령」은 24조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 「보존규칙」과 「보존령」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보존규칙」(1916)과 「보존령」(1933) 비교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고적과 유물로만 간단히 한정하여 분류	총독부의 관리·통제에 두는 문화재의 범주를 종전보다 세분화하여 보물과 고적으로 나누고,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추가함으로써 대상과 범위를 확대, 형식을 구체화		
고적 및 유물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소성명 혹은 명칭만 기재	조선총독의 관여를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규정, 총독은 보존회 자문을 받아 등록에서 나아가 '지정', 긴급한 때는 '임시지정'도 가능 지정대장에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주소성명을 동 리·번지까지 상세 기재		
등록된 고적 및 유물의 이전, 수선, 처분 등의 경우 미리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의 허가 필요	보물의 수출 및 移出을 금지하되 다만 보존회 자문을 얻은 조선총독의 허가에 따르도록 소유권 행사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물 소유자에게 李王家·관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出陳 의무 부여		
발견 신고나 현상 변경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벌금이나 科料 부과	총독의 허가 없이 보물을 수출 또는 이출하는 경우 최 고 징역형에 처하는 등 벌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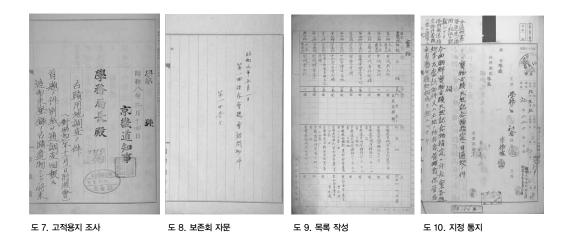
¹⁷ 조선총독부、『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1934, p. 56.

「보존령」의 제정 배경에는 조선의 유물, 유적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려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이 있었으며, 총독의 권한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문기관인 보존회 역시 종전의 고적조사위원회 활동 중 보존 사무를 강화하여 문화재 관리와 통제를 본격화하는 등 이후 조선의 문화재는 「보존령」에 따라 조사・발굴・관리되었고, 일제는 조선의 유물과 유적을 적극적으로 지배・통제・관리할 수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다.

2. 보물고적의 지정방식과 대상

[지정] 문서철은 「보존령」 제정 이후 일제가 조선의 보물·고적 등을 조사·지정·관리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총독부는 「보존령」 시행 후 주요 문화재에 대해 보고할 것을 각도에 통지하였고, 해당 도에서는 지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지역별 古蹟用地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7. 이 조사는 종전의 등록대장 및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각 도는 지정대상의 조사 항목들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18

이러한 지정대장 초안을 바탕으로 1934년부터 1943년까지 1~2년에 한 번씩 총 7회에 걸쳐 보존회 총회를 개최하여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대상을 심의하고 지정 예정을 결의하였다 $_{\rm E8}$. 지정 예정 목록은 최종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정 목록으로 완성되어 $_{\rm E9}$ 『朝鮮總督府官報』를 통해 1934년부터 1943년까지 1년에 한두 차례 지정 고시되었다. 19 여기에는 지정번호·명칭·소재지·소유



¹⁸ 조사 항목은 명칭, 수량, 소재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구조 형식 및 크기, 상태, 연혁, 보존상 필요 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다.

^{19 「}찬란한 반만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고적, 국보 252점 萬歲에 보존을 결정, 보물 210, 고적 21, 천연물 21점 조선보물고 적보존회서」、『동아일보』、1934년 5월 3일. "이 보존령이 발표되기 전에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있어 213점이 등록되

자의 주소와 성명까지 공개되었으며, 각 도 및 지정대상 문화재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도 통지서를 배부하여 지정 사실을 알렸다 $_{\Sigma10}$. 20 이렇게 공포된 문화재에는 해당 석표를 세우고, 철책을 두르는 등 보호 작업이 진행되었다. 21

「보존령」에 의해 문화재로 일괄 지정된 첫 사례는 1934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고시 제430호에 의해 보물 153건, 고적 13건, 천연기념물 3건이 지정된 것이었다. 보물 제1호는 경성 남대문(崇禮門)이며, 제 2호는 경성 동대문(興仁門)이다. 기존의 「고적 및 유물 대장」에 등록된 고적유물 이외에 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성문, 성곽, 고적 등도 지정대상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지정 고시는 보물 제419호, 고적 제 145호, 천연기념물 제146호까지 지정되었던 1943년 12월 30일의 고시 제1511호였음도 알 수 있다.

1934년 1차 지정 고시에서는 주로 경성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곽 건축과 각 도의 대표적인 고적들이 지정되었다.²² 2차 지정고시인 1935년 5월 24일 고시 제318호에서는 경기, 황해, 충청, 경북지역의 문화재들이 지정되었는데, 고적으로는 수원성곽과 滿月臺, 주요 寺址와 산성지들이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6년의 3차 및 4차 지정 고시부터는 왕릉과 산성지, 각지의 사찰 건축물들이 주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사찰 내부 석탑, 석등, 탑비 등의 유물들과 함께 사찰 안의 주요 건축물도 본격적으로 고적 지정의 범주에 포함되었다.²³ 1938년 5월 3일 고시 제393호의 6차 고시에서는 각 사찰의 건조물들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고,²⁴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보물 지정이 확대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통제. 관할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私有로 넓어져 갔음을 의미한다.

1939년 10월 18일 고시 제857호의 7차 고시부터는 건축물이나 고적, 산성지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적. 유물에서 나아가 靑磁獅子鈕蓋香爐. 靑磁飛龍形水注 등 소형 유물에 대한 보물 지정이 시작되었

어 있던 바이 등록된 것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결과 111점이 선출되고 그 외에 101점이 새로이 첨가되었는데 근근이 결정된 것은 관보로 발표되리라 한다."

²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에는 그 사본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적 제142호 양산 신기리 산성의 지정통 지서(개인 소장) 등 각 도 및 소유자에게 전달한 통지서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각각에 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²¹ 총독부에서 이러한 보존 작업을 지시하고, 각 도에서 해당되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석표를 제작, 건립하였으며 그 비용은 총독부로 청구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지정] 43~46 참조.

²² 종전의 등록 범주에서 배제되었던 성곽건축물에 대하여 「보존령」에 의한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가 조선 성곽건축의 백미로 꼽은 대표적인 성벽과 문루 등 많은 건조물이 보물고적 지정 목록에 포함되었다. 京城城郭 (고적 제25호), 南大門(보물 제1호), 東大門(보물 제2호), 開城 南大門(보물 제10호), 平壤城郭(平壤羅城(고적 제79호), 平壤 普通門(보물 제138호), 大同門(보물 제136호), 浮碧樓(보물 제137호), 水原城郭(고적 제14호), 晉州 矗石樓(보물 제276호), 安州 百祥樓(보물 제246호), 義州 南門(보물 제307호) 등이 그것이다.

^{23 [}지정] 24 참조.

^{24 [}지정] 25, 「지정사찰록」에는 이 때 지정 고시된 보물 제270호부터 제296호가 하나의 목록으로 묶여있는 것이 확인 된다.

다. 이러한 경향은 1943년 12월 30일의 11차 고시에 이르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총독부는 과학적 조사와 보존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선의 문화재를 침탈하는 한편으로 이를 한민족의 타율성과 停滯性을 강조한 植民史觀과 연계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발굴조사가 '漢四郡' 과 '任那日本府'를 입증하고자 평양 부근 및 경남·전남 일대에 집중된 것이나 秥蟬縣碑와 낙랑토성, 나주 반남 고분군 등을 문화재로 지정한 점 등이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3. 북한 소재 고적의 지정해제

「보존령」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문화재 지정 작업은 조선총독부의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행정적 과정이었으며, 지정 고시된 내용은 신문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되었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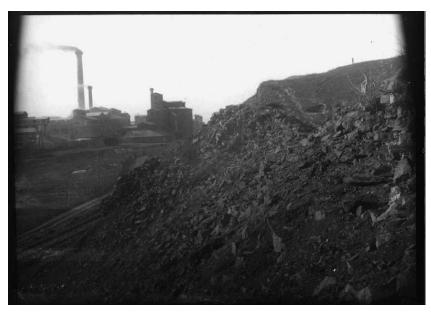
또한 1933년 「보존령」 제정 이후 빈번히 일어난 '지정해제'는 문화재 관리가 조선총독부의 철저한통제 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황해도 봉산의 鵂鶹山城은 고구려 때쌓은 휴류성을 기반으로 통일신라시대에 구축된 산성이다. 휴류산성은 1934년 「보존령」에 의해 고적제3호로 지정되었지만 이미 「고적 및 유물 대장」에도 212호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도 1930년대 초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음이 [지정] 문서철 등에서 확인된다. 26 휴류산성은 고구려 축성구조의 기본 틀을 보여주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아 1938년 5월 3일 고시 제393호에서는 그 지역이 추가지정된다.

그러나 산성 내부가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동쪽 외부 단면에 석회암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아사노(淺野) 시멘트 회사가 광구개발을 청원해서 고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달라는 公益照會가 있었지만 이는 1938년 11월 25일 제4회보존회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다가 1942년 6월 15일의 고시 제896호로 일부 해제가 이루어졌고, 1943년 9월 27일 제7회 보존회 총회에서 전면적인 지정해제가 결의되었다. 일제가 급박한 戰時 상황에서 철강과 시멘트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해제를 밀어붙인 결과였다. 27 이로써 휴류산성 지역에서 석

^{25 「}光輝 만대에 찬란할 반도 옛 문화의 精華, 보존 결정된 것 252건」, 『매일신보』, 1934년 5월 4일: 「석표를 세워서 보물고적을 守護, 총독부 300개 제작」, 『동아일보』, 1938년 5월 25일.

^{26 [}지정] 3 및 47과 『유리원판 목록집』 1~5(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7~2001) 참조.

^{27 「}고적과 보물도 應召, 금일 총회에서 휴류산성을 해제 결정」, 『매일신보』, 1943년 9월 28일, "석회석은 전쟁물자로서 대단히 귀중한 철강과 '시멘트'의 원료가 되므로 이번에 고적보존의 지정을 해제하고 석회석을 캐내기로 된 것인데 이것은 당국이 고적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위한 비상대책인 것을 일반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전쟁에 필요하면 고적보물 응소도 당연, 田中會長談」, "전쟁 수행상 절대로 필요한 자원이 파묻혀 있다면 이 지역을 보존으로부터 해제하여 직접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한 요청에 응할 수속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도 11. 휴류산성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회석 채취가 가능해졌고, 고적의 훼손을 막을 방도는 없었다 $_{\Xi11}$. 휴류산성의 지정해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문화재 파괴 사례로 꼽힌다.

전면적인 지정해제 외에 지정 지역의 일부 해제는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일제의 군사, 행정적인 결정과 배치될 경우에 해당 지정 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그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지정 지역의일부 해제는 고적과 관련해서 약 11건이 이루어졌다. [지정] 문서철 중에는 간략한 자료이지만 고적, 고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의일부 지정해제 및 지정해제 관계 문서들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수 있다.

고적 제79호 평양나성은 1938년 5월 3일에 지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도로 부설을 위해 평양부윤이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 지역의 일부 해제를 요청하였고,²⁸ 1942년 6월 15일 고시 제895호에 의해 평양나성에 대한 일부 지정해제가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평안남도 평양부 평천리, 서성리, 당상리의 국유 및 평양부 소유 총 4,140평(약 13,686㎡)의 지정 지역이 해제되었다.

보물 제11호 개성 演福寺鐘은 관람객 증가로 인한 유물 보호 및 관리를 이유로 개성 南大門樓에서 개성부립박물관 안에 종각을 신설하여 이전하도록 허가한 자료도 있다.²⁹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종의

^{28 [}지정] 10 중 「자문 제4호 고적 일부 지정 해제에 관한 건」 참조.

^{29 [}지정] 27 중 「자문 제6호 보물 현상 변경에 관한 건」 참조.

표면에 있는 글자들이 마모되는 등 보물 훼손이 우려되므로 종을 옮기도록 개성부윤이 보물의 현상 변경을 신청하고 있다. 연복사종은 북한 국보 제136호로 현재 남대문루 위에 걸려 있다.

Ⅳ. 맺음말

「보존규칙」으로 시작된 고적유물 '등록'에 이어 「보존령」에 의해 정착된 '지정' 제도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근대적인 법령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지정한 '보물'은 일 본 본토에서 지정한 '국보' 보다 격하된 단계의 것이었다. 또한 충독부의 필요에 의해 이전이나 반출, 지정해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즉,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 및 지정은 고적유물의 관리와 보존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실상은 충독부의 의도에 따라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지배 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일제의 문화재 발굴과 지정에서 '任那' 및 '樂浪'관련 유적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이를 발굴, 보존, 선전하는 것으로 이어져 '內鮮一體'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데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보존회 총회의 결의사항은 매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되었고,³⁰ 이는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 하에서 조선통치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고적조사] 및 [지정] 문서철은 일제강점기에 발 간된 「朝鮮古蹟圖譜」와 「古蹟調査報告書」, 「古蹟調査特別報告」, 「朝鮮寶物古蹟圖錄」 등과 직접적 으로 연관된다. 이들 발간물이 일제의 고적조사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추진된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 의 공식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공문서가 지니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국가기록 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 정리 및 조사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록, 지정, 보존

투고일 2014. 3. 20. | 심사개시일 2014. 5. 2. | 게재확정일 2014. 5. 30.

^{30「}寶物, 古蹟, 天然記念物」, 『동아일보』, 1938년 11월 26일, "특히 금번 지정되려는 것은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것이라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보물, 고적을 통해 내선융화를 강화, 빛나는 新指定 24점」, 『매일신보』, 1938년 12월 1일; 「勤勞報國은 古蹟愛護에서」, 『동아일보』, 1938년 8월 20일.

Registration and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s through the Archives of Government-General Museum

Lee Hyeonil* / Lee Myunghee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15 as the fifth anniversary monument of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Since October 1921, it had been in charge of an investigation, preservation, designation, publication and so forth until August 1945.

The Preservation Decree of 1933 is meaningful as the modern regulation about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s during Japanese occupation. Unlike National Treasure in mainland Japan, however, it was demoted to Treasure in colonial Korea. Moreover, Historic Site was lifted by the need of Government-General. In other words, the registration and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tightened Government-General's control in the name of their preservation.

In fact, the excavation and designation of 'Mimana(任那)' or 'Lelang(樂浪)' remains were useful to strengthen the logic of 'Unity of Japan and Korea'. And its propaganda was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policy that justified her domination.

By analyzing the Archives of Government-General Museum, this paper examines the registration and designation procedures of cultural heritages. And it also finds out the situation of cultural heritages at that time in northern Korea.

Key words: Archives of Government-General Museum of Joseon, Japanese colonial rul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designation, preservation

^{*} Researcher, National Museum of Korea